##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86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10호, 2015. 12.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 이유

사용금지이지만 비의도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메탄올' 및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여 품질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가. 사용금지 원료인 '메탄올' 및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추가 (안 별표 4)

○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15.7.1.)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메탄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미량의 정 밀한 검출이 요구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 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 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다. 기타 참고사항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6호

「화장품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110호, 2015.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제7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메탄올

가) 푹신아황산법: 검체 10 mL를 취하여 포화염화나트륨용액 10 mL 넣어 충분히 흔들어 섞고, 대한민국 약전 알코올수측정법에 따라 증류하여 유액 12 mL를 얻는다. 이 유액이 백탁이 될 때까지 탄산칼륨을 넣어 분리한 알코올분에 정제수를 넣어 50 mL로 한 것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0.1 % 메탄올 1.0 mL에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 0.25 mL를 넣고 정제수를 가해 5.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메탄올 표준액 5 mL를 취하여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VI. 일반시험법 VI-1. 원료의 "9. 메탄올 및 아세톤시험법" 중 메탄올항에 따라 시험한다.

- 나)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 1) 물휴지 외 제품
- ① 증류법: 검체 약 10 mL를 정확하게 취해 증류플라스크에 넣어 물 10 mL, 염화나트륨 2 g, 실리콘유 1 방울 및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 10 mL를 넣어 초음파로 균질화하고 증류하여 유액 15 mL를 얻는다. 이액에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 50 mL로 하여 여과한 것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탄올 2.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 L로 하고 이 액 1.25 mL, 2.5 mL, 5 mL, 10 mL, 20 mL 각각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 50 mL로 한 액을 각각의 표준액으로 한다. 각각의 표준액과 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작 1.27 에 나는 시험한다.
- ② 희석법: 검체 약 10 mL를 정확하게 취해 메탄올을 함유하지 않은 에 탄골을 10 mL를 넣어 초음파로 균질화 하고 메탄올 함유하지 않은 에탄 올을 넣어 50 mL로 한 후 여과한 것을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탄올 2.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에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1 L로 하고 이 액 1.25 mL, 2.5 mL, 5 mL, 10 mL, 20 mL 각각 정확하게 취하여 메탄올을 함유 하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 50 mL로 한 액을 각각의 표준액으로 한다. 각각 의 표준액과 검액을 가지고 다음의 조작 조건에 따라 시험한다.
- ③ 검체의 유형에 따라 증류법 또는 희석법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조작조건>
- · 검출기 : 수소염이온화검출기(FID)
- · 칼 럼 : 안지름 0.32 mm, 길이 약 30 m인 관에 폴리에틸렌글리콜을 0.5 /m

두께로 피복한다.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칼럼온도: 50 ℃에서 5 분 동안 유지한 다음 150 ℃까지 매분 10 ℃씩 상승 시킨 다음 2 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한다.

· 검출기온도 : 240 °C

· 시료주입부온도 : 200 ℃

· 운반기체 및 유량: 질소 1.0 mL/min

#### 2) 물휴지

검체 약 3 mL를 정확하게 취해 검액으로 한다. 따로 메탄을 표준품 1.0 mL을 정확하게 취해 물을 넣어 정확하게 1.0 L로 하고 이 액 각각 0.3 mL, 0.5 mL, 1 mL, 2 mL, 4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물을 넣어 100 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각각의 검액과 표준액을 가지고 기체크로 마토그래프-헤드스페이스법으로 다음 조작조건에 따라 시험한다.

### <조작조건>

· 기체크로마토그래프는 '1) 물휴지 외 제품' 조작조건과 동일하게 조작한다. 다만, 스플리트비는 1:10으로 한다.

• 헤드스페이스

- 바이알 용량 : 20 mL

- 주입량(루프) : 1 mL

- 바이알 평형 온도 : 70 ℃

- 루프 온도 : 80 ℃

- 주입라인온도 : 90 ℃

- 바이알 평형시간 : 10 분

- 바이알 퍼지시간 : 0.5 분

- 루프 채움시간 : 0.5 분

- 루프 평형시간 : 0.1 분

- 주입시간 : 0.5 분

9.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다음 시험법 중 적당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검체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헥산·아세톤 혼합액 (8:2)을 넣어 정확하

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프-수소염이온화검출기를 이용한 방법

## <조작조건>

· 검 출 기 : 수소염이온화검출기(FID)

· 칼 럼: 안지름 약 0.25 mm, 길이 약 30 m인 용융실리카관의 내관에 14% 시아노프로필페닐-86 % 메틸폴리실록산으로 0.25 μm

두께로 피복한다.

· 칼럼온도 : 150 ℃에서 2 분 동안 유지한 다음 260 ℃까지 매분 10 ℃씩 상승시킨 다음 15 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한다.

· 검체도입부온도: 250 ℃

· 검출기온도: 280 °C

• 운반기체 : 질소

·유 량:1 mL/분

· 스플리트비 : 약 1:10

주) 내부표준액: 벤질벤조에이트 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핵 산·아세톤 혼합액 (8:2)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검체 약 1.0 g을 정밀하게 달아 핵산·아세톤 혼합액 (8:2)을 넣어 정확하게 10 mL로 하고 초음파로 충분히 분산시킨 다음 원심 분리한다. 그 상 등액 5.0 mL를 정확하게 취하여 내부표준액<sup>주)</sup> 1.0 mL를 넣고 핵산·아세톤 혼합액 (8:2)을 넣어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핵실프탈레이트 표준품을 정밀하게 달아 핵산·아세톤 혼합액 (8:2)을 넣어 녹여 희석하고 그 일정량을 취하여 내부표준액 1.0 mL를 넣고 핵산·아세톤 혼합액 (8:2)을 넣어 10.0 mL로하여 0.1, 0.25, 0.5, 1.0, 2.5, 5.0 μg/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표준액 각 1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내부표준법에 따라 시험한다. 필요한 경우 표준액의 검량선 범위 내에서 검체 채취량 또는 희석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조작조건>

· 검 출 기 : 질량분석기

- 인터페이스온도 : 300 ℃

- 이온소스온도 : 230 ℃

- 스캔범위 : 40 ~ 300 amu

- 질량분석기모드 : 선택이온모드

성분명	선택이온
디부틸프탈레이트	149, 205, 223
부틸벤질프탈레이트	91, 149, 206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146, 167, 279
내부표준물질(플루오란센-d10)	92, 106, 212

> · 칼럼온도 : 110 ℃에서 0.5분 동안 유지한 다음 300 ℃까지 매분 20 ℃씩 상승시킨 다음 3분 동안 이 온도를 유지한다.

· 검체도입부온도 : 280 ℃

・ 운반기체 : 헬륨

· 유 량 : 1 mL/분

· 스플리트비 : 스플릿리스

주) 내부표준액 : 플루오란센-d10 표준품 약 10 mg을 정밀하게 달아 핵 산·아세톤 혼합액 (8:2)을 넣어 정확하게 1000 mL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